

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14762      |
| 의 퇴 인  | 윤종균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 | 2026. 1. 29. |
| 추 계 번호 | 25D6572      |

#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5조<br>(복무기간의 계산) | 별정우체국연금의 적용을 받다가 군인연금의 적용을 받게 된 사람은 종전의 「별정우체국연금법」에 따른 재직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함 | 의무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5조<br>(복무기간의 계산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 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군인연금 적용자 중 이전에 별정우체국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별정우체국연금 적용 재직기간과 군인연금 적용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, 군인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 - 현행 제도상 별정우체국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에 가입할 경우, 별정우체국연금으로부터 해당 제도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받고, 이후 군인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만 군인연금으로부터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받게 됨
    - － 현재 공무원연금·군인연금·사학연금은 제도 간 재직(복무)기간 합산이 가능하나, 별정우체국연금과 군인연금 등 타 직역연금은 제도 간 재직기간 합산이 안됨

- 현행법상 일시금 지급 대상자인 사람 중 일부는 개정안에 따라 별정우체국연금과 군인연금 간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
    -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따라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한 직역연금 간의 최소 연계기간은 10년이지만, 군인연금이 연계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20년이어야 함
    - 현행법상 별정우체국연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, 군인연금은 복무기간 20년 이상 시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므로 별정우체국 재직기간과 군인 복무기간이 총 20년 이상이더라도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, 군인 복무기간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두 제도로부터 일시금을 지급받음
    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별정우체국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각각 10년, 20년 미만이라도,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게 됨
  - 개정안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으로 신규 연금 수급권자가 된 사람 중 일부는 생애 총 연금 수급액 수준이 현행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금액보다 높을 수 있음
    - 다만, 연금 개시 이후 단기간 내 사망한 신규 연금 수급권자는 개정안에 따른 생애 연금 수령액보다 현행 제도에 따른 일시금 수령액이 더 많을 수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별정우체국연금과 군인연금 간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에 따라 생애 수령할 급여액의 수준이 더 높아질 사람의 수와 그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
- 현재 별정우체국연금에 가입 중인 사람 중 향후에 군인연금에 가입할 사람의 수와 각각의 가입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### 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이미연 | 김안나 |

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|
| 이미연 | 02-6788-4661 | mylee@nabo.go.kr |